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. 6. 26 선고 2024가단327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26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3. 9. 체결한 증여계약을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간이설시의 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 양시호

별지